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부적정

기 관 명 사상구, 기장군

내 용

「의료법」 제48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시자의 허가¹²²⁾를 받아야 한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관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, 아래 【표】와 같이 사상구 “○○○○재단” 등 2개 의료법인에서는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부대사업을 운영하였다.

【표】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관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/군	의료법인명	의료기관명	부대사업종류	운영방식	임대보증금	허가여부
사상구	○○○○재단	○○○○○○○병원	편의점	임대	월세(55만원)	미허가
사상구	○○○○재단	○○○○○병원	편의점	임대	100,000	미허가

122) 「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(위임사항)에 의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, 재산처분, 정관변경의 허가 등은 구청장·군수에게 권한위임

구/군	의료법인명	의료기관명	부대사업종류	운영방식	임대보증금	허가여부
사상구	○○○○재단	○○○○병원	의료기기판매업	임대	60,000	미허가
사상구	○○○○재단	○○○○병원	장례식장매점	임대	30,000	미허가
사상구	○○○○재단	○○○○병원	일반음식점	임대	20,000	미허가
사상구	○○○○재단	○○○○병원	휴게음식점	임대	30,000	미허가
기장군	○○○○재단	○○병원	장례식장	임대	750,000	미허가
기장군	○○○○재단	○○병원	소매점	임대	50,000	미허가
기장군	○○○○재단	○○병원	수퍼마켓, 자동판매기영업	임대	100,000	미허가

조치할 사항 사상구청장, 기장군수는

[시정]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라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